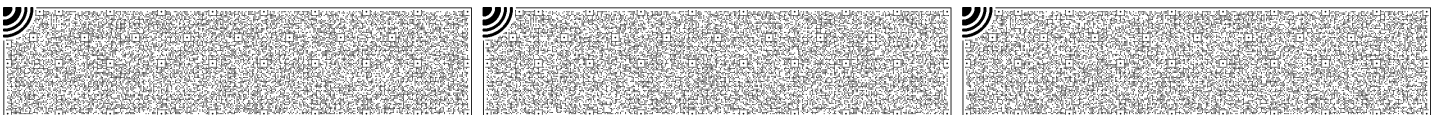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150호

의 안 명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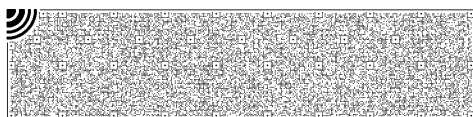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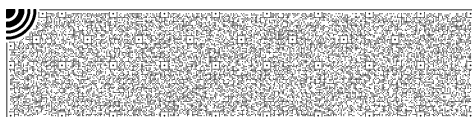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5 18

주 문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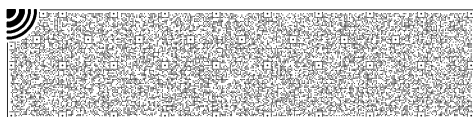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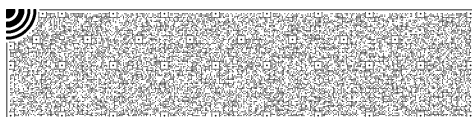
[별 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

202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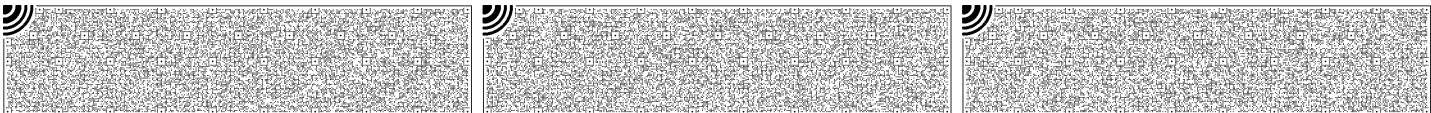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일반 현황	2
III. 현황 및 문제점	4
① 고속도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다시 부과	4
②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의 불명확성	6
③ 미납통행료 납부방법의 한계	9
IV. 개선방안	13
① 고속도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근거 마련	13
② 부가통행료 부과 규정 명확화	14
③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다양화	16
IV. 조치사항 및 기한	17
붙임 1. 관련 법령	18



I. 추진배경

- **고속도로는 별도의 신호등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여행 등 목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고속도로법인은 이러한 고속도로에 대해 차량의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 징수**
 - ※ 2024년 기준 한국도로공사와 23개 민자고속도로법인이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통행한 차는 28억 2,135만대이고 통행료는 5조 9,957억원
 - 그러나 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착오진출 후 재진입 시 기본요금 다시 부과, 제한적인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등으로 국민부담 가중 및 불편 발생
 - 착오진출 등으로 고속도로를 잠시 이탈했다가 짧은 시간 내 재진입하는 경우에도 기본 요금(900원)부터 다시 부과
 - 거짓 부정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할 의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미납통행료의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
- **[국민신문고]** 하이패스 기간이 다되었으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통행료 8천원을 미납하였는데 8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상습·계획적으로 미납한 것도 아닌데 과한 처분(25.7월)
- 민자고속도로 일부구간에서 미납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의 통합 납부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하려 해도 후불하이패스카드 등 일부 수단으로만 결제가 가능해 납부 과정에서 불편 발생
- 이에, 고속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부과 및 미납통행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상 편의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II. 일반 현황

□ 고속도로의 정의 및 현황

○ (정의) 고속도로는 유료도로의 종류 중 하나로,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 도로

-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로 구분

- ✓ 유료도로는 「유료도로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유료도로법」 제2조)
- ✓ 유료도로는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유료도로로 구성

○ (고속도로 노선)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법인이 운영하는 59개 노선이고, 총연장은 5,303.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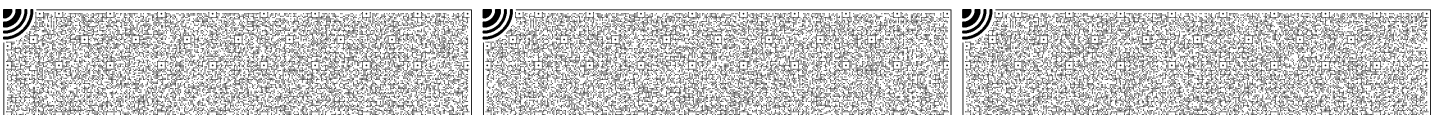
< 고속도로 노선 · 총연장 현황¹⁾ >

관리주체	노선 수(개)	총연장(km)
한국도로공사(재정고속도로)	36	4,326.5
민자고속도로법인(민자고속도로)	23	977.0
합계	59	5,303.5

※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유료도로는 34개 노선, 총연장 231.6km

○ (통행료) 고속도로는 이용자가 통행료를 지불하고, 유료도로관리청²⁾ 및 유료도로관리권자³⁾는 통행료를 받아 고속도로의 건설 또는 투자비용을 회수

1) 국민권익위 실태조사('26.1월) 및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2) 유료도로를 건설·관리하는 주체로 국토부장관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
 3)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설정 받은 자



- ✓ 유료도로관리청 통행료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유료도로법」 제16조)
- ✓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유료도로법」 제16조)
- ✓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우 미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유료도로법」 제19조)

- '24년 기준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4조 3,681억원이고, 23개 민자고속도로는 1조 6,276억원

< 고속도로 통행료 현황4) > (단위 : 억원)

연 도	통행료		소 계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20년	39,589	13,678	53,267
'21년	41,741	13,593	55,334
'22년	42,027	15,128	57,155
'23년	42,926	15,959	58,885
'24년	43,681	16,276	59,957
합 계	209,964	74,634	284,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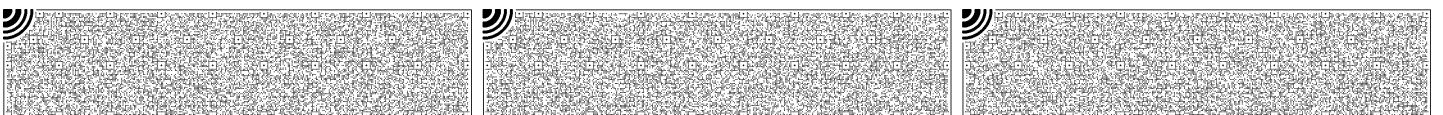
○ (이용 현황) 이용 건수는 '24년 기준 재정고속도로 18억 7,407만건이고, 민자고속도로는 9억 4,728만건

< 고속도로 이용 현황5) > (단위 : 천건)

연 도	이용차량		소 계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20년	1,613,614	695,538	2,309,152
'21년	1,698,097	779,451	2,477,548
'22년	1,770,380	846,203	2,616,583
'23년	1,819,804	891,024	2,710,828
'24년	1,874,070	947,284	2,821,354
합 계	8,775,965	4,159,500	12,935,465

4) '26년 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5) '26년 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Ⅲ. 현황 및 문제점

1 고속도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다시 부과

현황

- (통행료 산정) 한국도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기본요금 900원이고, 차종별로 km당 주행요금 추가로 부과

< km당 주행요금⁶⁾ >

구분	대상차량	주행요금
1종(소형차)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44.3원
2종(중형차)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45.2원
3종(대형차)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7.0원
4종(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62.9원
5종(특수화물차)	4축이상 특수화물차	74.4원

- (고속도로 재진입 차량 현황) 재정고속도로 운행 중 고속도로에서 나가서 10분 이내에 동일한 IC로 재진입한 차량은 2주간('25.11.17~11.30.) 35만 9,534대이고 기본요금 통행료 합계는 3억 2,358만원

- 2주간의 재진입 차량 현황을 52주(1년)로 환산하면 차량 수는 약 934만 7,884대, 기본요금 통행료는 약 84억 1,309만원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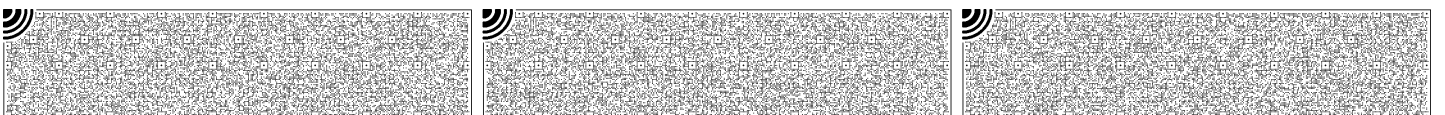
※ (10분 초과 20분 이내 진입 차량 52주 추정치) 726만 500대, 65억 3,445만원

< 고속도로 재진입 차량 상세 현황⁷⁾ >

기 간	고속도로 진출 후 10분 이내 진입		고속도로 진출 후 10분 초과 20분 이내 진입	
	차량 수(대)	통행료(천원)	차량 수(대)	통행료(천원)
'25.11.17~11.30. (2주간)	359,534	323,581	279,250	251,325

6) 국토교통부공고 '15.12월

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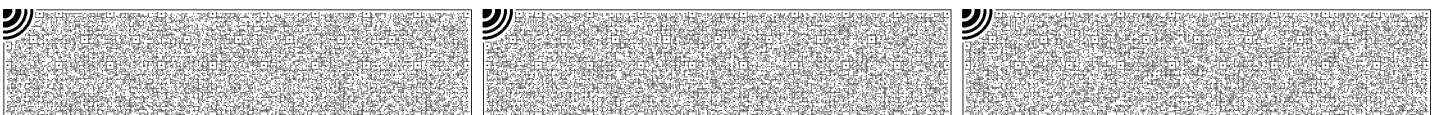


문제점

-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진출** 등 사유로 짧은 시간 내 동일한 IC로 재진입하는 경우에도 **기본요금부터 다시 부과**
 - ※ '25년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19억 1,937만대⁸⁾이고, 이중 1,660만 8,384대(약 0.87%)가 고속도로를 이탈한 후에 20분 이내에 동일 IC로 다시 진입한 것으로 추정(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1월)
 -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km당 주행요금은 차종에 따라 적용되지만, **기본요금 900원은 고속도로 진입 시 항상 부과**
 -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통행료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
 - ※ 특히 초보운전 및 생소한 지역 방문 등으로 고속도로를 착오진출하는 경우 정상적 진출을 위하여 후진 등을 시도할 경우 사고를 유발
 - ※ 지하철의 경우 이용방향 착오 및 화장실 이용 등 긴급용무로 지하철을 나와 15분 이내에 동일한 역에서 동일노선으로 재탑승할 경우 기본요금 1,550원 면제
- 짧은 시간 내 고속도로를 재진입하여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여 민원제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25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 ✓ **[민원사례] (고속도로 통행료)** 인천에서 양지까지 통행료 3,800원을 지불하는데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고속도로를 진입하면 통행료 1,000원이 더 부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국민신문고, '24.3월)
- ✓ **[민원사례] (고속도로 오진입·오출구 시 10분 이내 회차 차량 톨비 면제 건의)** 고속도로 운행 중 출구를 잘못나가는 일은 초보자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오류, 피로운전, 생소한 지역 방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운전자들이 톨비와 시간손해를 우려하여 후진 등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10분 이내 회차 차량은 톨비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국민신문고, '25.12월)
- ✓ **['25년 국정감사] (고속도로 기본요금 재부과 문제 지적)** 고속도로 오진출 후 짧은 시간 내 재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 요청

8) 가집계한 '25년 통계(한국도로공사)



2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의 불명확성

현 황

- (부가통행료 부과) 고속도로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았을 경우 그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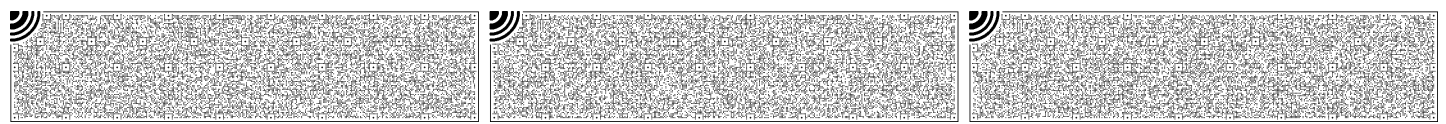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를 부가통행료로 규정하고, 부과 사유를 구체화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

✓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 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
5.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부가통행료 현황) 부가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와 14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부과하고, 9개 민자고속도로는 미부과⁹⁾

※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부과 여부를 결정

- 최근 5년간 통행료 중 미납된 880만건의 59%인 519만건에 대해 부가통행료를 부과
-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519만건 중 42%인 218만건은 미징수

< 재정고속도로 부가통행료 현황¹⁰⁾ > (단위 : 억원, 천건)

연도	통행료 총액	미납통행료				부가통행료			
		총액		미징수액		총액		미징수액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년	39,589	518	19,944	36	1,254	222	930	98	340
'21년	41,741	580	21,943	37	1,278	187	773	79	270
'22년	42,027	656	25,286	42	1,507	184	777	82	294
'23년	42,926	772	29,938	53	2,019	278	1,135	131	429
'24년	43,681	880	34,071	71	2,742	372	1,577	223	849
합계	209,964	3,406	131,182	239	8,800	1,243	5,192	613	2,182

문제점

○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하였으나,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보다 부과 사유가 확대 될 소지

-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에만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9) 부가통행료 미부과 민자고속도로법인 9개 : 경기동서순환(봉담-송산),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서부내륙(평택-부여), 신공항하이웨이(인천국제공항), 신대구부산, 인천김포, 천안논산, 포천화도, 옥산오창(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5.12월)

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1월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실수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우려**

※ 최근 5년간 미납통행료 880만건 중 59%인 519만건에 대해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었으나, 이에는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전자카드 잔액 없음, 하이패스 차로 통과 등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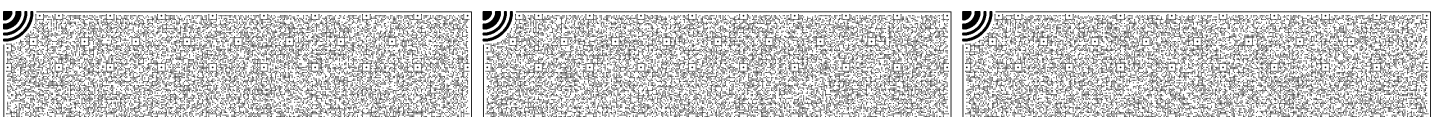
- ✓ **[민원사례]**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인데 하이패스 구간으로 잘못 진입하여 통행료를 미납하였음에도 부가통행료 부과(국민신문고, '23.12월)
- ✓ **[민원사례]** 하이패스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독촉장도 없이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었으니 구제해 달라(국민신문고, '25.4월)
- ✓ **[민원사례]** 하이패스 카드 기간이 다되었으나, 이를 인지하고 못해 3건의 미납통행료가 발생하였는데, 소액이라 잊어버리고 있다가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어 너무 충격을 받았음, 이는 너무 과한 처분임(국민신문고, '25.7월)
- ✓ **[민원사례]**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오류로 미납통행료가 발생하였고, 고의적이거나 상습 미납이 아니니 부가통행료를 감면해 달라(국민신문고, '26.2월)

○ 시행령 제14조 제5호의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례 발생**

※ ○○○는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① 일반차로 무단 통과, ② 하이패스차로 단말기 미부착, ③ 단말기 사용정지, ④ 전자카드 미삽입, ⑤ 전자카드 잔액없음, ⑥ 전자카드 거래정지, ⑦ 차종불일치 등 7개의 유형으로 자의적으로 구체화하여 부가통행료 부과¹¹⁾

- 위의 7가지 사유 중 '전자카드 잔액 없음' 등 일부 사유는 단순한 실수로 면탈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까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부담 가중 및 민원 발생**

11) 국민권익위 실태조사('26.1월)



3 미납통행료 납부방법의 한계

현황

- (통행료 수납시스템 연계 현황) 23개 민자고속도로 노선 중 16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된 구간이며, 나머지 7개는 비연계 구간임

* 원톨링시스템(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으로 운영사가 다른 연계도로에서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요금 일괄 수납

<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연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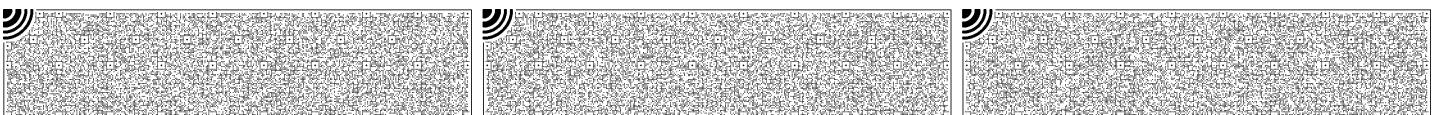
민자고속도로 중 연계 구간(16개)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오산-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항신항 제2배후, 상주-영천, 구리-포천, 옥산-오창, 수도권제2순환도로, 봉담-송산, 포천-화도, 평택-부여
민자고속도로 중 비연계 구간(7개)	인천국제공항, 수도권 제1순환, 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서울-문산, 용인-서울

- (미납통행료 고지 방법 등) 한국도로공사와 11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우편 및 전자를 통해 미납통행료를 고지하고, 나머지 12개 법인은 우편으로만 미납통행료 고지

< 미납통행료 고지 및 납부방법 >

구분	납부 고지 방법	납부 방법
한국도로공사	- 우편 - 전자(알림톡, 인증톡)	영업소 방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앱, 지로, 휴게소, 주유소, ARS, 편의점(GS, CU), 민간앱(T-map, 휘슬, 신한은행)
민자고속도로법인(23개)	(11개 법인) 우편, 전자	영업소 방문,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도로공사 수납방식 공동이용*
	(12개 법인) 우편	영업소 방문, 계좌이체, 도로공사 수납방식 공동이용

*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통합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납부방법은 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콜센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등 다양하며 민자고속도로법인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이용 중



- 재정고속도로 및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와 미납통행료 현황
 - 재정고속도로의 최근 5년간 통행료 총액은 20조 9,964억원이고, 미납통행료 총액은 3,406억원이며, 미납통행료 징수율은 약 93%

< 재정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¹²⁾ > (단위 : 억원)

연 도	통행료 총액	미납통행료		
		총액(100%)	징수액(%)	미납액(%)
2020년	39,589	518	482(93.1)	36(6.9)
2021년	41,741	580	543(93.6)	37(6.4)
2022년	42,027	656	614(93.6)	42(6.4)
2023년	42,926	772	719(93.1)	53(6.9)
2024년	43,681	880	809(91.9)	71(8.1)
합계	209,964	3,406	3,167(93.0)	239(7.0)

※ 괄호는 미납통행료 총액 중 징수액과 미납액의 비율

- 민자고속도로의 최근 5년간 통행료 총액은 7조 4,634억원이고, 미납통행료 총액은 1,546억원이며, 미납통행료 징수율은 약 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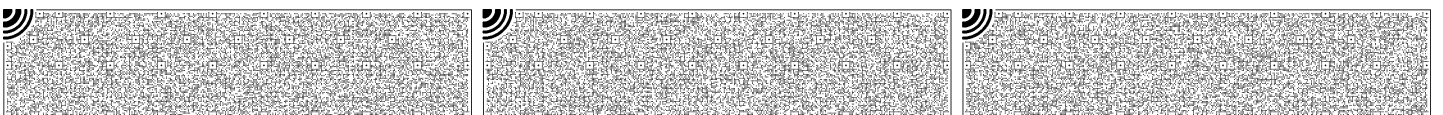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¹³⁾ > (단위 : 억원)

연 도	통행료 총액	미납통행료		
		총액(100%)	징수액(%)	미납액(%)
2020년	13,678	228	201(88.2)	27(11.8)
2021년	13,593	260	225(86.5)	35(13.5)
2022년	15,128	310	270(87.1)	40(12.9)
2023년	15,959	357	311(87.1)	46(12.9)
2024년	16,276	391	330(84.4)	61(15.6)
합계	74,634	1,546	1,337(86.5)	209(13.5)

※ 괄호는 미납통행료 총액 중 징수액과 미납액의 비율

12) 국민권익위 실태조사('26.1월)

13) 국민권익위 실태조사('26.1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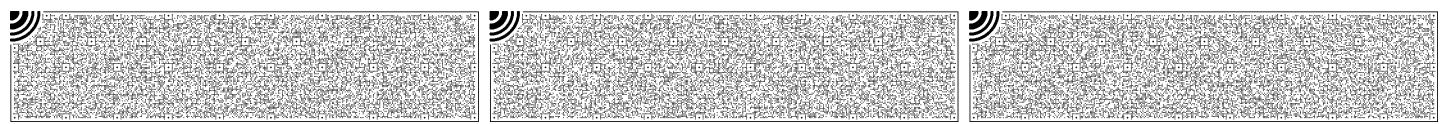
-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통합납부시스템'*의 납부방법의 한계
 - *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미납통행료 납부수단으로 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모바일앱, 콜센터 등 납부방법 다양
 -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된 16개 민자고속도로는 통합납부시스템의 다양한 결제방식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 비연계 민자고속도로는 통합납부시스템 중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하고, 이마저도 후불하이패스카드¹⁴⁾와 EX모바일카드¹⁵⁾로만 결제 가능
 - ※ 후불하이패스카드와 EX모바일카드가 없을 경우 이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함
 - 비연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통합납부시스템의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없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민원이 지속 발생하며, 미납통행료의 징수율도 낮아질 우려
 - ※ 최근 2년간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율은 89.2%이고, 비연계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율은 80.5%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율 등 현황¹⁶⁾ > (단위 : 억원)

연 도	미납통행료					
	재정고속도로와 연계 구간(16개)			재정고속도로와 비연계 구간(7개)		
	총액(100%)	징수액(%)	미납액(%)	총액(100%)	징수액(%)	미납액(%)
2023년	207	189(91.3)	18(8.7)	150	122(81.3)	28(18.7)
2024년	239	209(87.4)	30(12.6)	152	121(79.6)	31(20.4)
합계	446	398(89.2)	48(10.8)	302	243(80.5)	59(19.5)

※ 괄호는 미납통행료 총액 중 징수액과 미납액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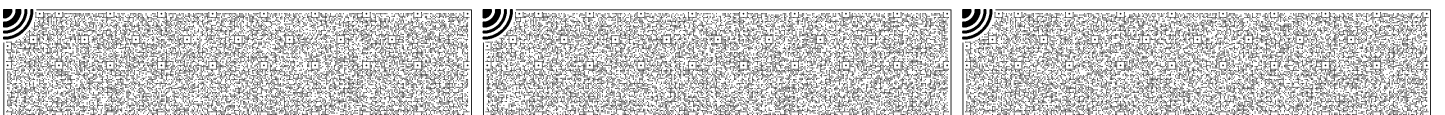
14) 신용카드를 모 카드로하는 후불 하이패스 전용카드로 신용카드사에서 발급
 15)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후불하이패스카드로 이용자의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음
 16) 국민권익위 실태조사('26.1월)



- 민자고속도로법인의 미납통행료 고지 수단 및 납부방법이 제한적
 - 12개 민자고속도로법인은 미납통행료 고지를 우편으로만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납부방법도 영업소 방문 및 계좌이체만 가능
 -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 주식회사,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화성광주고속도로 주식회사, 제이영동고속도로(주)¹⁷⁾
 -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미납통행료 징수율도 낮아질 우려
 - ※ 미납통행료 고지 방법과 결제방식이 다양한 재정고속도로의 최근 5년('20년~'24년)간 미납통행료 징수율은 약 93%이고,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율은 약 86.5%임
-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통합납부시스템'의 납부방법이 제한적이어서 민원 지속 발생

- ✓ **[민원사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라는 이유만으로 네이버페이, 계좌이체 등의 간편한 방법을 막아놓고 후불카드를 새로 구매해서 등록 후 지불하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국민신문고, '25.1월)
- ✓ **[민원사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을 오직 후불하이패스카드와 EX도로공사 카드로만 지불할 수 있어 EX도로공사카드를 새로 발급 받았으나, 도착하지 않았고, 발급한 사실조차 잊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미납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국민신문고, '25.1월)
- ✓ **[민원사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미납통행료 900원을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도 안되고 계좌이체도 안되는데 어떻게 납부하라고 하는 건가요?(국민신문고, '23.10월)
- ✓ **[민원사례]** 민자고속도로 미납요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도 안되고 후불하이패스카드도 없고 어떻게 결제를 하라는 것인지...(국민신문고, '24.5월)
- ✓ **[민원사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를 후불하이패스카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좌이체, 일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 시정 요청 (국민신문고, '26.1월)

1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25.12월)



IV. 개선방안

1 고속도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근거 마련

- 재정고속도로의 진출요금소를 통과한 후에 짧은 시간 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 착오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나와 짧은 시간 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국민부담 완화 및 사고 예방
 - ※ 서울교통공사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 2023년부터 이용방향 착오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로 지하철을 나와 동일한 역의 동일노선로 재탑승할 경우 기본요금 1,550원을 면제하여 국민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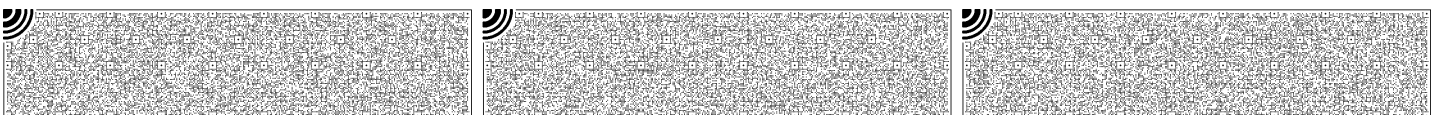
< (예시) 기본요금 면제 개정(안) >

현 행	개 선 (안)
< 신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폐쇄식 요금소를 진출하였다가 동일한 요금소로 00분 이내 재진입한 차량의 기본요금 면제

▶ 「국토교통부 공고」에 반영

- 재정고속도로의 진출요금소를 통과한 후에 동일한 요금소로 짧은 시간 내에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시스템 마련 **(한국도로공사)**
 - ※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고속도로로, 고속도로 준공 시 민자 고속도로 법인별로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통행료를 결정하고 있어 재정고속도로 우선 도입 후에 확대 방안 검토

▶ 기본요금 자동면제 시스템 마련



< 참고 사례(지하철 기본운임 면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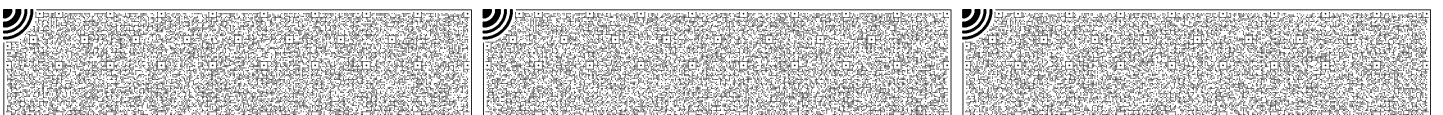
■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5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오거나, 나왔다 들어갈 경우의 처리)

개표 또는 집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오거나,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집표 또는 개표 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횡수차감을, 제2호의 경우에는 기본운임 부과를 면제합니다.

1. 정기권 사용 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한 역(환승의 경우에는 동일노선만 적용)에서 동일한 카드로 집표 후 5분 이내 다시 개표하는 경우
2. 선·후불교통카드 사용 여객이 **반대방향으로 재탑승하거나 화장실 이용 등 긴급용무**를 위해 **집표 후 15분 이내 동일한 역**(환승역의 경우에는 동일노선만 적용)에서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하는 경우**. 단,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2 부가통행료 부과 규정 명확화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의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법률의 취지에 맞게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 (국토교통부)
 -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그 밖에 부정의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로 개선
-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그 밖에 부정의 방법'을 이유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대상 행위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자의적 운영 방지



< (예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개 선 (안)
<p>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법 제 20조제1항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위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p> <p>1. ~ 4. (생 략)</p> <p>5.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p> <p>(신 설)</p>	<p>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위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u>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u></p> <p>② <u>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1항제5호를 이유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는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에 제1항제5호의 행위 유형으로 신고한 것에 속하는 행위에 한한다.</u></p>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 참고 사례(기차 부가운임 징수) >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철도사업자는 송하인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중량·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다양화

- 비연계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자도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통합납부시스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한국도로공사]

- *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미납통행료 납부수단으로 편의점, 휴게소 무인 수납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모바일앱, 콜센터 등 납부방법 다양
- 통합납부시스템 이용 확대 시 비연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일반 신용카드로 미납통행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높아질 전망

▶▶ 한국도로공사 통합납부시스템 개선

- **정책제안** 민자고속도로법인의 미납통행료 고지 수단 및 납부 방법 다양화 **[12개 민자고속도로법인]**

- 미납통행료 고지 수단과 납부방법이 단편적인 12개 민자고속도로*는 고지 수단 중 전자고지를 추가하고, 자체운영 중인 납부방법에 신용카드를 추가하는 등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선
-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 주식회사,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화성광주고속도로 주식회사, 제이영동고속도로(주)

▶▶ 12개 민자고속도로법인 미납통행료 고지 수단 및 납부방법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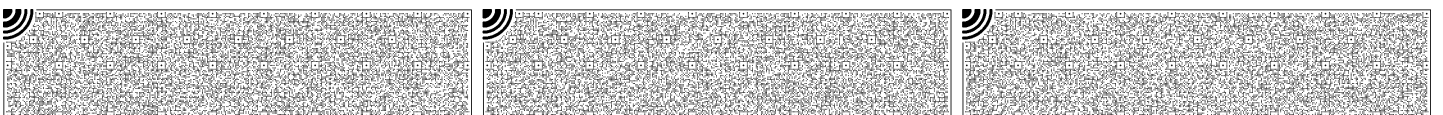


V. 조치사항 및 기한

□ 권고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소관부처	조치기한
<p>① 고속도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근거 신설</p> <p>① 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후 짧은 시간 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공고」에 반영</p>	국토교통부	26. 12월
<p>② 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후 짧은 시간 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 면제 시스템 마련 ↳ 기본요금 자동면제 시스템 마련</p>	한국도로공사	26.12월
<p>② 부가통행료 부과 규정 명확화</p> <p>①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로 개선</p> <p>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를 사유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대상행위를 국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반영</p>	국토교통부	27.6월
<p>③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다양화</p> <p>① 비연계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자가 통합납부시스템의 다양한 방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한국도로공사 통합납부시스템 개선</p>	한국도로공사	27.6월
<p>② [정책제안] 12개 민자고속도로법인의 미납통행료 고지 수단 및 납부방법 다양화 ↳ 미납통행료 고지 수단 및 납부방법 개선</p>	12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27.6월



□ 유료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말하고,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하며,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그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서로 다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괄 수납 사실과 각각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적은 표지(標識)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업무를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내야 한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1.>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절차)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1. 통행일시 및 통행장소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금액
3.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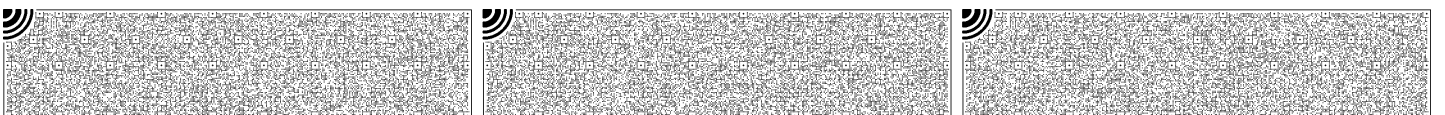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부과 예정금액

③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5.>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금액
3. 부가통행료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4. 이의제기 방법·기한 및 이의제기 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해당 유료도로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5월 18일

위원장 정 일 연

위원 한 삼 석

위원 조 소 영

위원 이 명 순

위원 홍 봉 주

위원 김 태 영

위원 신 대 희

위원 권 석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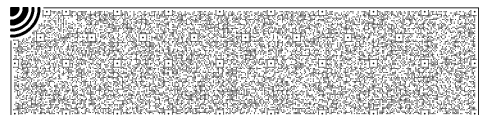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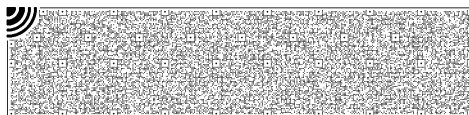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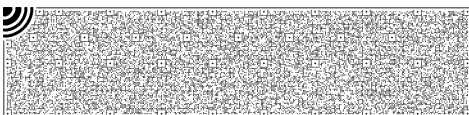
위원 최 명 규

위원 이 흥 주

위원 이 태 한

위원 김 바 울

위원 신 상 욱



정본입니다.

2026. 5. 18.

국 민 권 의 위 원

